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5가합50525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1. 신용보증기금

2.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피 고 1. C 주식회사

2. D

3. 주식회사 E

4. F

변론 종결 2017. 1. 13.

판결 선고 2017. 2. 17.

주 문

1.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1,317,649,744원 및 그 중 991,306,853원에 대하여 2014.11. 3.부터,
323,949,884원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나. 피고 D은 피고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326,339,004원 및그 중
323,949,884원에 대하여 2014. 11. 4.부터각 2015. 12. 11.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피고 C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E에 대한 청구,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신용보증기금과 피고 C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신용보증기금과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과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 원고 신용보증기금(이하 편의상 '원고'라고만 한다.)의 청구 : 2015. 12. 12. 이후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 사이에 2014. 7.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1억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E은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이하 편의상 '원고소송수계인'이라고만 한다.)의 청구 : 피고 F는 소외 A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4. 8.22. 접수 제1297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인의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 소송수계인에게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C와 2002. 12. 20. 신용보증원금을 8,0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02.12. 20.부터 2003. 12. 19.까지(그 후 신용보증기간은 2014. 11. 28.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약정')을, 2003. 4. 10. 신용보증원금을 5,6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03. 4. 10.부터 2004. 4. 9.까지(그 후 신용보증기간은 2014. 11. 28.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약정')을, 2005. 12. 6. 신용보증원금을 2억 72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05. 12. 6.부터 2006. 12. 5.까지(그 후 신용보증원금은 1억 8,4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은 2014. 11. 28.까지로 각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약정')을, 2014. 6. 30. 신용보증원금을 9억 9,0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4. 6. 30.부터 2015. 6. 2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4약정', 이하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면서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위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위 피고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대위변제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위약금, 원고가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때 피고 D은 위 제1 내지 3약정에 따라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소외 A은 위 제4약정에 따라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C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터 잡아 농협은행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로부터 2002. 12. 20. 1억 원, 2003. 4. 10. 7,000만 원, 2005.12. 6. 2억 5,900만 원을 각 대출받고, 2014. 6. 30.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으로부터 11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C는 2014. 8. 22. 원금 연체 및 2014. 9. 12. 당좌부도 등으로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11. 3. 신한은행에 1,002,818,043원(제4약정에 기한 대출원금 및 이자 합계), 2014. 11. 4. 농협은행에 323,949,884원(= 제1약정에 기한 대출원금 및 이자 합계 81,118,663원 + 제2약정에 기한 대출원금 및 이자 합계 56,665,970원 + 제3약정에 기한 대출원금 및 이자합계 186,165,251원)을 각 변제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잔액은

2,389,120원이고, 원고가 제4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중 11,511,190원을 회수하여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3,887원이며,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라. 한편 피고 C는 2014. 7. 21.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피고 E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와 2014. 8. 21. 접수 제804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A은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2. 피고 F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4. 8. 22. 접수 제129716호로 위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이어 2014. 9. 1. 위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등기소 2014. 9. 5. 접수 제13948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 주었다.

마. 원고는 A과 피고 F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A이 인천지방법원 2015하단5099호, 2015하면510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3. 31.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 소송수계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고 위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를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소로 교환적 변경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1,317,649,744원[= 대위변제금 잔액 1,315,256,737원(= 농협은행 323,949,884원 + 신한은행 1,002,818,043원 - 회수금 11,511,190원) + 법적절차비용 잔액 2,389,120원 + 확정손해금 3,887원] 및 그 중 신한은행 대위변제금 잔액 991,306,853원(= 대위변제금 1,002,818,043원 - 회수금 11,511,190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4. 11. 3.부터, 그 중 농협은행 대위변제금 323,949,884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4. 11. 4.부터, 피고 D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돈 중 326,339,004원(= 농협은행 대위변제금 잔액 323,949,884원 + 법적절차비용 잔액 2,389,120원 + 확정손해금 3,887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323,949,884원에 관하여 위 2014. 11.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12. 11.까지 약정에 의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원고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은 자신이 피고 C의 이사로 일하던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위 피고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2012. 12. 15. 위 회사로부터 퇴사하였고, 퇴사 당시 원고 등에게 수 차례에 걸쳐 연대보증계약관계를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법률상 원고의 청구를 저지하거나 감액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E, F(이하 이 항에서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3. 12.26. 선고 2012다4191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일 당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2.항 기재 구상금채권이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전에 이미 위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1개월 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피고 C가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4. 11. 3. 대위변제를 하여 피고 C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갑 제10호증, 을마 제1, 6,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무렵 피고 C는 시가 약 58억 7,500만 원의 이 사건 제1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1,317,649,744원의 구상금 채무, 농협은행에 대한 4,539,462,413원의 대출금 채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167,560,261원의 대출금 채무, 소외 G에 대한 5억 5,000만 원의 약정금 채무 등 합계 약 6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E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30427 판결 등 참조).

갑 제13호증, 을마 제4, 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무렵 A은 시가 약 847,544,000원 내지 9억 5,000만원의 이 사건 제2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2.항 기재 피고 C의 구상금 채무에 관한 993,699,860원(= 신한 은행 대위변제금 잔액 991,306,853원 + 법적절차비용 잔액 2,389,120원 + 확정손해금 3,887원)의 연대보증금 채무, 농협은행에 대한 6억원의 대출금채무, 피고 F에 대한 3억 7,400만 원의 연대보증금 채무 등 합계 1,967,699,860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A이 피고 F와 사이에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은 A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심화시킨 행위로 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 즉 채무자회생법상 부인대상 행위에 해당하고, A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② 매매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일련의 정상적인 거래과정을 통해 체결된 것이고 피고들은 피고 C와 A의 사해행위에 대하여는 알지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회생법상의 부인의 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런데 갑 제10, 11호증, 을마 제1 내지 11, 14, 15,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부동산중개법인 서흥(이하 '중개법인 서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금속표면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E은 그 납품처인 현대기아자동차의 공장설비 및 환경 개선요구에 따라 새로 마련할 공장건물을 물색하던 중 중개법인 서흥으로부터 피고 C가 중개를 의뢰한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소개받은 사실, ② 위 중개법인 서흥의 중개에 따라 피고 C, E 사이에 2014. 7. 21. 매매대금 58억 7,500만 원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 E은 계약 당일 계약금 5억 8,75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한 사실, ③ 그 후 피고 C의 대표이사인 H이 피고 E의 대표이사인 피고 F에 게 사업상 약속어음금 변제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전의 대여를 요청하여 피고F가 H에게 2014. 8. 19. 2억 1,000만 원을, 2014. 8. 20. 1억 6,4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 ④ 피고 E은 2014. 8. 21. 위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피고 C가 지정한 G에게 교부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농협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 4,539,462,413원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 167,560,261원을 각 해당 은행에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30,477,326원은 피고E이 피고 C의 위 부동산 관련 채무를 책임지는 것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는 위 매매대상 부동산 중 건물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1억 3,750만 원을 지급받은 뒤 피고 E에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실, 5한편 피고 F가 위 대여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H의 배우자인 A이 2014. 8. 22.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그 소유의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F와 사이 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6 그 후 H, A이 피고 F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 대신 위 피고가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위 피고가 2014. 9. 1. A과 사이에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위 대여금채무 합계 3억 7,400만 원과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었던 농협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6억 원을 합한 9억7,400만 원으로 결정되었으나 계약서에는 H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을 8억 1,000만 원으로 기재한 사실, ⑦ 피고 E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나머지 잔금 명목으로 2014.9. 16.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일부를 피고 C로부터 임차한 소외 주식회사 에이오이이 테크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4,16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9. 22.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압류권자인 소외 I 에게 5,292,930원, 소외 J에게 2,605,2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14. 10. 6.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미납 전기요금 28,496,520원을 납부한 사실, ⑧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중개 당시 중개법인 서흥은 피고 E에게 위

부동산의 등기부상 권리관계만을 설명하였고, 피고 C의 자산이나 채무 상황 등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어 이를 설명하지 않은 사실, ⑨ 이 사건 제1, ②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각 부동산의 시가와 큰 차이 없이 정해졌고, 위 각 계약체결 이전 피고 C, H, A와 피고들사이에 특별한 인적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 C 및 A와 피고들의 관계, 각 처분행위의 내용 및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② 매매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피고 C와 A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들고 있는 갑 제 10, 13 내지 21,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중개법인 서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등의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피고들의 악의 추정이 유지된다고 보기 부족하다(원고는 특히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G 명의의 가등기의 설정 및 말소 경위가 의심스러우므로 피고들의 악의 추정이 유지된다는 취지로 강하게 주장하나, 갑 제10호증, 을마 제12,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각 알선을 G에게 부탁하면서 위 부동산이 60억 원에 매각될 경우 그 보수명목으로 6억 원을 지급해줄 것을 약정하고 위 부동산에 G 명의의 시기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 그런데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G이 아닌 중개법인 서흥의 중개에 의하여 이루어지자 G은 피고 C에 이를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결국 피고 C가 G에게 위약금 명목으로 7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이 2014. 8. 21. 피고 C에 지급할 이 사건 제1 매매계약대금 중 5억 5,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였고, 같은 날 위 G 명의의 가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경위사실에 특별히 의심이 갈 만한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위 G과의 법률관계는 피고들이 아닌 피고 C 및 H와 사이의 문제인 점에 비추어 G의 가등기 설정 및 말소에 관한 경위가 피고들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원고 소송수계인의 피고 F에 대한

부인의 청구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원고 소송수계인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윤상도, 판사 명선아, 판사 김기호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공장용지 3470.4㎡
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위 지상 가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공장
지층 867.25㎡
1층 1622.74㎡
2층 1405.23㎡
3층 1421.95㎡

[별지 2]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화성시
대 1018㎡
2. 경기도 화성시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층 단독주택
지1층 99.88㎡
1층 134.62㎡
2층 136.93㎡
3. 경기도 화성시
도로 48㎡
4. 경기도 화성시
도로 48㎡